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전영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: 2021. 8. 16.
발의의원: 전영준 의원

1. 제정 이유

종로구 관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 ~ 제4조).

나.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및 운영·관리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6조 ~ 제7조).

라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법령

1)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2)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

3)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제3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관련부서 : 청소행정과

라. 입법 예고(2021.7.21.~ 8.12.)

마.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현황(기준일자: 2021. 7.20.)

의류 수거함(개)	수거 및 처리량(톤)			위탁업체	관리 방법
350개	수거량	재활용량	폐기량	솔샘의류재활용 협동조합, 기능장애인협회 종로구지부, 서울시 재활용의류 협동조합,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	위탁
	173	155	18		

바. 의류수거함 관련 민원내용 (출처: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, 제2016 - 580호)

1) 설치위치 부적절

- 주택가 이면도로 임의설치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
- 주차장 출입구 주변 진·출입 장애
-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지역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 설치
- 주택가 이면도로 전신주 옆, 골목길 모퉁이, 공한지 앞 도로변 등에 설치

2) 설치장소, 개수, 간격, 크기, 디자인 등 기준 미비

3) 의류수거함 관리기준 및 운영기준 미비

- 도로점용허가 없이 민간단체, 협회, 업체, 개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
-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업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도로점용허가 없이 의류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성 용인
-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사후조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 예방의 실효성 미흡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2.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·시행
3.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(이하 “위법 의류수거함”이라 한다) 지도·단속

제3조(의류수거함 운영・관리자의 책무)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서울특별시 종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재활용

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5조(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)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・관리 등)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·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·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 운영·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운영·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운영·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·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·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제7조(의류수거함 운영・관리자의 업무 등) ① 제6조에 따라 운영·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2.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3.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4.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
5.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류수거함 운영・관리자 준수사항) ① 운영·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운영·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.

③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.

④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.

⑤ 운영·관리자는 제4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, 인도 등에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) 구청장은 운영·관리자가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위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,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 · 보관 · 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▢ 폐기물관리법

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나 공원 ·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· 군 ·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 ·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

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· 군 ·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▢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

제3조(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·군·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,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.

제6조(분리수거용기의 설치·관리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·보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·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, 배출품목·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, 유리병 전용봉투,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.